

법학전문대학원 학사운영규칙 개정(안) 신규대비표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제3조(교육목표) 본 대학원은 제2조 제2항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교육목표를 정한다.</p> <p>1. 내지 3. (생략)</p>	<p>제3조(교육목표)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과정</u>은 제2조 제2항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교육목표를 정한다. (개정 2014. .)</p> <p>1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</p>	<p>-학칙(2014.5.30. 개정)의 신설된 전문박사과정과 구분위해 석사과정 명시(이하 “과정 명시”)</p>
<p>제7조(학과 및 전공) ① 본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전문석사과정, <u>박사과정</u>을 두고, 각 과정에 법학과를 두며,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<u>둔다</u>.</p>	<p>제7조(학과 및 전공) ① 본 대학원에 학위과정으로 전문석사과정, <u>전문박사과정</u>을 두고, 각 과정에 법학과를 두며, 비학위과정으로 연구과정을 <u>둘 수 있다</u>. (개정 2014. .)</p>	<p>-법전원 전문박사과정 신설의 학칙 개정 반영</p>
<p>② 전문석사과정에는 법학전공을 설치하며, 효과적인 법학교육을 위하여 공법, 민사법, 형사법, 기업법 등의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.</p>	<p>② 전문석사과정과 <u>전문박사과정</u>에는 법학전공을 설치하며, 효과적인 법학교육을 위하여 공법, 민사법, 형사법, 기업법 등의 세부전공을 둘 수 있다.(개정 2014. .)</p>	<p>-전문박사과정의 세부전공 설치근거 명시</p>
<p>③ <u>박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운영</u>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법학전문대학원 <u>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운영규칙</u>」으로 정한다.</p>	<p>③ <삭제> (개정 2014. .)</p>	<p>-제52조와 중복이므로 삭제</p>
<p>제8조(입학정원)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<u>별표</u>와 같다.</p>	<p>제8조(입학정원) 본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<u>별표</u>와 같다.</p>	<p>-전문박사과정 정원 표기</p>
<p>제13조(학생구성의 다양성) ① <u>본 대학원</u>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한다.</p>	<p>제13조(학생구성의 다양성) ①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</u>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도록 노력한다. (개정 2014. .)</p>	<p>- 과정 명시</p>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② 내지 ③ (생략)</p> <p>제14조(입학허가 및 취소) 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<u>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</u>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5조(등록) 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편입학자는 3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④ 내지 ⑤ (생략)</p> <p>제18조(휴학) ① 내지 ② (생략)</p> <p>③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, 통산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.</p> <p>④ 내지 ⑤ (생략)</p> <p>제27조(제적)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.</p> <p>1. 내지 4. (생략)</p> <p>5.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</p> <p>6. 내지 7. (생략)</p>	<p>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4조(입학허가 및 취소) 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<u>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거나 서류의 허위기재 및 위조·변조 등 입학전형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자</u>에 대하여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5조(등록) 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</u> 편입학자는 3개 학기 이상을 등록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④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휴학) 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</u>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, 통산 6학기를 초과하지 못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④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제적)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</u>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1. 내지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에 해당되는 자. <u>이 경우 휴학하거나 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한 학기를 제외하고 연속한 것으로 본다.</u> (개정 2014. . .)</p>	<p>-법전원협의회총회 (2014.5.21.)의결사항으로 입학허가의 취소사유 구체화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적용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단서 추가</p>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제28조(수업연한)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3년(6학기)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3학기 이상으로 한다.</p> <p>제29조(수강신청) ①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학기당 최소 6학점 이상, 최대 20학점 이내에서 수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내지 ③ (생략)</p> <p>제33조(재수강) ①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성적이 <u>B-</u>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<u>A-</u>를 초과할 수 없다.</p> <p>④ 내지 ⑥ (생략)</p> <p>제35조(교과목편성의 원칙) ① (생략)</p> <p>②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운영위원회는 개별교과목의 성격과 그 중요성 및 타 교과목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학점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</p> <p>제36조(필수과목) 본 대학원의 필수과목은 기초실무과목, 기초이론과목, 기본이론과목, 종합평가과목 등으로 구성하되 세부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</p>	<p>제28조(수업연한)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과정</u>의 수업연한은 3년(6학기) 이상으로 한다. 다만,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3학기 이상으로 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제29조(수강신청) ①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</u>의 학생은 매 학기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, 학기당 최소 6학점 이상, 최대 20학점 이내에서 수강하여야 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3조(재수강) ①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 학생이</u> 이수한 과목을 다시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과목의 성적이 <u>C+</u>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재수강을 할 수 있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<u>B+</u>를 초과할 수 없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④ 내지⑥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5조(교과목편성의 원칙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</u>의 각 교과목은 2학점 3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학사운영위원회는 개별교과목의 성격과 그 중요성 및 타 교과목과의 관련성을 감안하여 학점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제36조(필수과목)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과정</u>의 필수과목은 기초실무과목, 기초이론과목, 기본이론과목, 종합평가과목 등으로 구성하되 세부과목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	<p>- 과정 명시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평가기준 재수강 요건 강화 반영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과정 명시</p>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
<p>제37조(이수학점)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기초이론과목 15학점의 범위 내에서,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41 576 969 735"> <thead> <tr> <th>과 정</th> <th>총 이수학점</th> <th>필수과목</th> <th>선택과목</th> <th>연구과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u>전문석사 학위과정</u></td> <td>90</td> <td>32</td> <td>58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제38조(법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의 학점인정) ①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<u>학점인정의</u> 요건 및 세부절차를 수강신청 개시일 3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내지 ⑤ (생략)</p> <p>제39조(특성화과정) ① 본 대학원은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목표로 정한다.</p> <p>② 내지 ③ (생략)</p> <p>제42조(성적분포) ① 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법조윤리, 모의재판, 실습과정, 법문서의 작성, 법률정보의 조사, 리걸클리닉 등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과목의 경우에는 ‘P(합</p>	과 정	총 이수학점	필수과목	선택과목	연구과목	<u>전문석사 학위과정</u>	90	32	58	-	<p>제37조(이수학점) 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학점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기초이론과목 15학점의 범위 내에서, 다른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상응하는 외국 대학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30학점의 범위 내에서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01 576 1830 735"> <thead> <tr> <th>과 정</th> <th>총 이수학점</th> <th>필수과목</th> <th>선택과목</th> <th>연구과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u>전문석사과정</u></td> <td>90</td> <td>32</td> <td>58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(개정 2014. . .)</p> <p>제38조(법학사 이상 학위취득자의 학점인정) ①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<u>전문석사과정의 학점인정</u> 요건 및 세부절차를 수강신청 개시일 3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.</p> <p>(개정 2014. . .)</p> <p>②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9조(특성화과정) ①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과정</u>은 중소기업법무를 특성화목표로 정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②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2조(성적분포) ①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</u>은 과목별 성적분포의 표준화를 위하여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법조윤리, 모의재판, 실습과정, 법문서의 작성, 법률정보의 조사, 리걸클리닉 등 상대평가가 적합하지 않은 실무과목의</p>	과 정	총 이수학점	필수과목	선택과목	연구과목	<u>전문석사과정</u>	90	32	58	-	<p>- 학칙 별표7과 용어 통일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외국어강의과목 평가기준 별도 명시(제한된 절대평가)하</p>
과 정	총 이수학점	필수과목	선택과목	연구과목																		
<u>전문석사 학위과정</u>	90	32	58	-																		
과 정	총 이수학점	필수과목	선택과목	연구과목																		
<u>전문석사과정</u>	90	32	58	-																		

현행	개정(안)	개정사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<p>격)', 'F(불합격)' 으로 평가할 수 <u>있으며 외국어강의는 절대평가할 수</u> 있다.</p> <p>② 상대평가를 함에 있어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반올림하여 적용하며,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한다.</p> <p>1. <u>수강인원이 10명 이상인 과목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. 단, 학점별 최대비율은 하위학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70 831 922 1299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학점별 최대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 : 25%</td> <td colspan="2">A+ :7%/A0:8%/A-:10%</td> </tr> <tr> <td>B : 50%</td> <td colspan="2">B+ :15%/B0:20%/B-:15%</td> </tr> <tr> <td>C : 21%</td> <td colspan="2">C+ :9%/C0:7%/C-:5%</td> </tr> <tr> <td>D,F : 4%</td> <td>D,F</td> <td>4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학점별 최대비율		A : 25%	A+ :7%/A0:8%/A-:10%		B : 50%	B+ :15%/B0:20%/B-:15%		C : 21%	C+ :9%/C0:7%/C-:5%		D,F : 4%	D,F	4%	<p>경우에는 'P(합격)', 'F(불합격)' <u>로 평가할 수 있다.</u> (개정 2014. .)</p> <p>② 상대평가를 함에 있어 비율에 따른 인원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반올림하여 적용하며, 상위등급에서부터 부여하되, 등급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하위등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. (개정 2014. .)</p> <p>1. <u>필수과목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성적평가를 한다.</u> (개정 2014. .)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028 831 1803 1316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 colspan="2">비율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A : 25%</td> <td>A+</td> <td>7%</td> </tr> <tr> <td>A0</td> <td>8%</td> </tr> <tr> <td>A-</td> <td>10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B : 50%</td> <td>B+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>B0</td> <td>20%</td> </tr> <tr> <td>B-</td> <td>15%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3">C : 21%~25%</td> <td>C+</td> <td>9%</td> </tr> <tr> <td>C0</td> <td>7%</td> </tr> <tr> <td>C-</td> <td>5~9%</td> </tr> <tr> <td>D,F : 0~4%</td> <td>D,F</td> <td>0~4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비율		A : 25%	A+	7%	A0	8%	A-	10%	B : 50%	B+	15%	B0	20%	B-	15%	C : 21%~25%	C+	9%	C0	7%	C-	5~9%	D,F : 0~4%	D,F	0~4%	<p>로 '외국어강의는 절대평가할 수 있다.' 삭제</p> <p>- 문구 정리</p> <p>- 법전원협의회총회 (2014.5.21.) 의결사항으로 필수과목의 상대평가비율 합리적 조정</p> <p>- 필수과목 조정내용 C- : 5%→5~9% D,F : 4% →0~4%</p>
구분	학점별 최대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25%	A+ :7%/A0:8%/A-: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50%	B+ :15%/B0:20%/B-: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21%	C+ :9%/C0:7%/C-: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D,F : 4%	D,F	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비율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 : 25%	A+	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A0	8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A-	1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 : 50%	B+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0	2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B-	1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C : 21%~25%	C+	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0	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C-	5~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D,F : 0~4%	D,F	0~4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

2.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아래와 같이 평가하며 동일 성적등급 내의 +(상), 0(중), -(하)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. 단, 학점별 최대인원은 하위학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수강인원	학점별 최대인원			
	A	B	C	D,F
9명	2	5	2	
8명	2	4	2	
7명	2	4	1	
6명	2	3	1	
5명	1	3	1	
4명	1	2	1	
3명	1	1	1	
2명	1	1		
1명	1			

(신 설)

개정(안)

다만,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. (개정 2014. .)

수강인원	인원			
	A	B	C	D,F
9명	2	5	2	
8명	2	4	2	
7명	2	4	1	
6명	2	3	1	
5명	1	3	1	
4명	1	2	1	
3명	1	1	1	
2명	1	1		
1명	1			

※ 동일 성적등급 내의 +(상), 0(중), -(하)의 인원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.

2. 선택과목은 다음의 비율에 따라 성적평가를 한다. (신설 2014. .)

구분	비율	
A	25~35%	※ 동일 성적등급 내의 +(상), 0(중), -(하)의 비율은 교과목 담당교수가 정할 수 있다.
B	35~50%	
C	15~40%	
D,F	0~25%	

개정사유

- 현행 제2호를 제1호 단서로 수정 배치

- 법전원협의회총회 (2014.5.21.) 의결사항으로 선택과목 상대평가 비율 합리적 조정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46조(학사경고 및 유급)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사경고에 해당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<u>2.0</u> 이하인자 2. 당해학기 취득성적 중 'F' 학점이 6학점 이상인 자 3.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자 <p>②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균평점이 <u>2.0</u>이하인 자는 유급한다. 이 경우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.</p> <p>③ <u>유급된 자가</u> 해당학년에 취득한 'B₀'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.</p>	<p><u>다만, 외국어 과목 또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과목은 위 분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이 경우에도 수강인원이 3명 이상인 때에는 A등급이 40%(소수점 이하는 버림)를 초과할 수 없다. (신설 2014. .)</u></p> <p><u>3. 동일한 교과목이 2개 이상의 강좌로 분반된 경우에는 수강인원이 10명 미만인 강좌에 대하여 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(신설 2014. .)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6조(학사경고 및 유급) ①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</u> 다음 각 호의 자는 학사경고에 해당한다. (개정 2014. .)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당해학기 취득성적이 평점평균 <u>2.2</u> 이하인자 2. 내지 3. (현행과 같음) <p>② <u>본 대학원 전문석사과정의</u> 해당학년 말 최종성적 평균평점이 <u>2.2</u>이하인 자는 유급한다. 이 경우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고 휴학하거나 <u>국내외 대학원에서 수학한</u> 경우에도 연속되는 것으로 본다. (개정 2014. .)</p> <p>③ <u>유급학년은 제28조의 수업연한에 포함하지 아니하며,</u> 해당학년에 취득한 'B₀'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한다.</p>	<p>-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과목 절대평가 (단, 외국어과목, 수강인원 3명 이상의 경우 A등급 평가 비율 제한)</p> <p>- 분반강좌의 성적 평가 형평성 유지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상대평가 비율조정으로 성적의 상향가능성이 있어 엄정한 학사관리를 지속하고자 학사경고 및 유급기준을 기존보다 강화(2.0->2.2으로 상향)하고, 유급의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</p> <p>- 적용기준 명확화</p>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④내지 ⑤ (생략) <u>(신 설)</u></p> <p>제47조(실습과정 및 해외연수과정) ① 본 대학원은 현장형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습과정과 해외기관교류 연수과정을 둔다.</p> <p>② 내지 ⑤ (생략)</p> <p>⑥ 실습과정 및 해외기관교류 연수과정을 위한 신청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및 해외교류연수과정 운영 <u>내규</u>」로 정한다.</p> <p>제48조(학위취득요건) ①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학위과정</u>의 학위취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</p> <p>1. 내지 2. (생략) 3. 누계 평점평균 <u>2.0</u> 초과인 자 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50조(학생지도) ① 본 대학원은 학생들의 학교생활, 진로지도, 기타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‘지도교수제도’와 ‘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’를 운영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④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⑥ 제28조의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한 자는 학사경고 및 유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47조(실습과정 및 해외연수과정) ①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과정</u>은 현장형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실습과정과 해외기관교류 연수과정을 둔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② 내지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실습과정 및 해외기관교류 연수과정을 위한 신청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 및 해외교류연수과정 운영 <u>매뉴얼</u>」로 정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제48조(학위취득요건) ①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과정</u>의 학위취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.</p> <p>1. 내지 2. (현행과 같음) 3. 누계 평점평균 <u>2.2</u> 초과인 자 (개정 2014. . .)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50조(학생지도) ① 본 대학원 <u>전문석사과정</u>은 학생들의 학교생활, 진로지도, 기타 상담 및 지도를 위하여 ‘지도교수제도’와 ‘법학전문대학원 학생지도센터’를 운영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	<p>-적용기준 명확화[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제36조(학사경고)제1항 단서 동일 취지]</p> <p>- 과정 명시</p> <p>- ‘내규’의 명칭을 ‘매뉴얼’로 변경</p> <p>- 용어 정리 및 졸업요건 평점평균 강화</p> <p>- 과정 명시</p>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<p>제51조(장학금) ① 내지 ③ (생략) ④ 장학금의 지급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내규」로 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1 장 <u>학술박사학위과정</u> 및 연구과정</p> <p>제52조(<u>학술박사학위과정</u> 및 연구과정) 본 대학원의 <u>박사과정</u>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및 연구과정 운영규칙」으로 정한다.</p> <p>제53조(학사운영위원회) ① 내지 ② (생략)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심의한다. 1. 입학,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.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·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. 교육과정 및 수업 계획에 관한 사항 4. 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선정에 관한 사항 5. 예산·결산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6. 규칙 등의 제정 및 개·폐에 관한 사항 7. 학사운영 기준 및 개선 방안 (신 설) 8.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</p> <p>④ 내지 ⑦ (생략)</p>	<p>제51조(장학금) ① 내지 ③ (현행과 같음) ④ 장학금의 지급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기준」으로 정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1 장 <u>전문박사과정</u> 및 연구과정 (개정 2014. . .)</p> <p>제52조(<u>전문박사과정</u> 및 연구과정) 본 대학원의 <u>전문박사과정</u>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과정 운영규칙」으로 정한다. (개정 2014. . .)</p> <p>제53조(학사운영위원회) ① 내지 ② (현행과 같음)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심의한다. 1. 내지 7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8.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</u> (신설 2014. . .) <u>9. 기타 본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</u> (개정 2014.. .)</p> <p>④ 내지 ⑦ (현행과 같음)</p>	<p>- ‘내규’의 명칭을 ‘기준’으로 변경</p> <p>- 용어 정리</p> <p>- 용어 정리 및 관련 규칙의 명칭 변경</p> <p>- 학사운영위원회의 연구·심의 대상에 전문박사과정 및 연구과정의 운영 사항을 추가</p> <p>- 호 번호 조정</p>

현 행	개정(안)	개정사유
(신 설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부 칙</u></p> <p>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제2조 (경과조치) ① 제14조 제3항의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.</p> <p>② 제33조 제1항과 제3항, 제46조 제2항과 제3항 전단의 개정 내용은 2015학년도부터 적용한다.</p>	- 부칙 신설

별표. 학과, 전공 및 입학정원

현 행				개정(안)				개정사유
과 정	학 과	전공	입학정원	과 정	학 과	전공	입학정원	- 제8조(입학정원) 관련 전문박사과정의 입학정원 신설 (학칙 반영)
전문석사과정	법학과	법학전공	50	전문석사과정	법학과	법학전공	50	
<u>(신설)</u>	<u>(신설)</u>	<u>(신설)</u>	<u>(신설)</u>	<u>전문박사과정</u>	<u>법학과</u>	<u>법학전공</u>	<u>10</u>	